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1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u>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u> 으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 <u>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0명</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회의 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정하고 있음.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하여 증감을 반복해오다 제13대 국회에서 299명으로 증가한 후,¹⁾ 제16대 국회에서 273명²⁾으로 감축되었다가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299명으로 증가하였고,³⁾ 제19대 국회부터 300명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⁴⁾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전국구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전국구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4) 「공직선거법」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

《 역대 국회의원 정수 》

대수	의석(지역구/비례)	내용		
제1대 국회	200(200/0)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 한명 선출), 단원제(국회를 1개의 원으로 구성)		
제2대 국회	210(210/0)			
제3대 국회	203(203/0)			
제4대 국회	233(233/0)			
제5대 국회	291(291/0)	양원제	민의원	233석, 소선거구
			참의원	58석, 대선거구
제6대 국회	175(131/44)	소선거구제, 단원제, 비례대표 명칭은 전국구		
제7대 국회				
제8대 국회	204(153/51)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대신 유신헌정우회 (유신헌정우회는 박정희대통령 지명)		
제9대 국회	219(146/73)			
제10대 국회	231(154/77)	유신헌정우회 폐지, 전국구 부활		
제11대 국회	276(184/92)			
제12대 국회				
제13대 국회	299(224/75)	이하 소선거구제		
제14대 국회	299(237/62)			
제15대 국회	299(253/46)			
제16대 국회	273(227/46)	비례대표 명칭: 전국구→비례대표		
제17대 국회	299(243/56)	이하 1인 2표제 (지역구·비례 투표 분리) 도입 (기존에는 지역구 투표를 정당투표로 간주)		
제18대 국회	299(245/54)			
제19대 국회	300(246/54)			
제20대 국회	300(253/47)			
제21대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22대 국회	300(254/46)	지역구 1석 증가, 비례 1석 감소		

※ 자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선거제도변천사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추가

(https://www.rokps.or.kr/mobile/dataroom/data_05.asp)

그런데, 국회가 국민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정치효능감⁵⁾이 매우 낮은

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5)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느낌, 즉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며, 개별 시민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함. 김동진·김재우, “민주적 학급풍토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상황이고,⁶⁾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세비와 불체포특권⁷⁾, 9명의 보좌인력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⁸⁾을 부여받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다고 여겨지는 국회의원의 수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⁹⁾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서 측정한 지표 중 하나인 “기관신뢰도”는 사회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세부기관별로 신뢰도를 보면 “의료계”가 76.4%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교육계”도 6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4.1%로 가장 낮으며 “노동조합”이 43.1%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국회”의 경우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 5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34.4%에서 10.3%p 감소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감소폭도 큰 것으로 드러남.

의도에 미치는 영향-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제53권1호(2021.3.), p.7.

6)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만점)에 그침. 제21대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국회의원들의 역량 또는 자질 부족(32.3%)라고 꼽음. 이투데이(2024.6.22.),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7)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8) 일부 언론보도에 따른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 가량임. 한국경제(2024.2.19.),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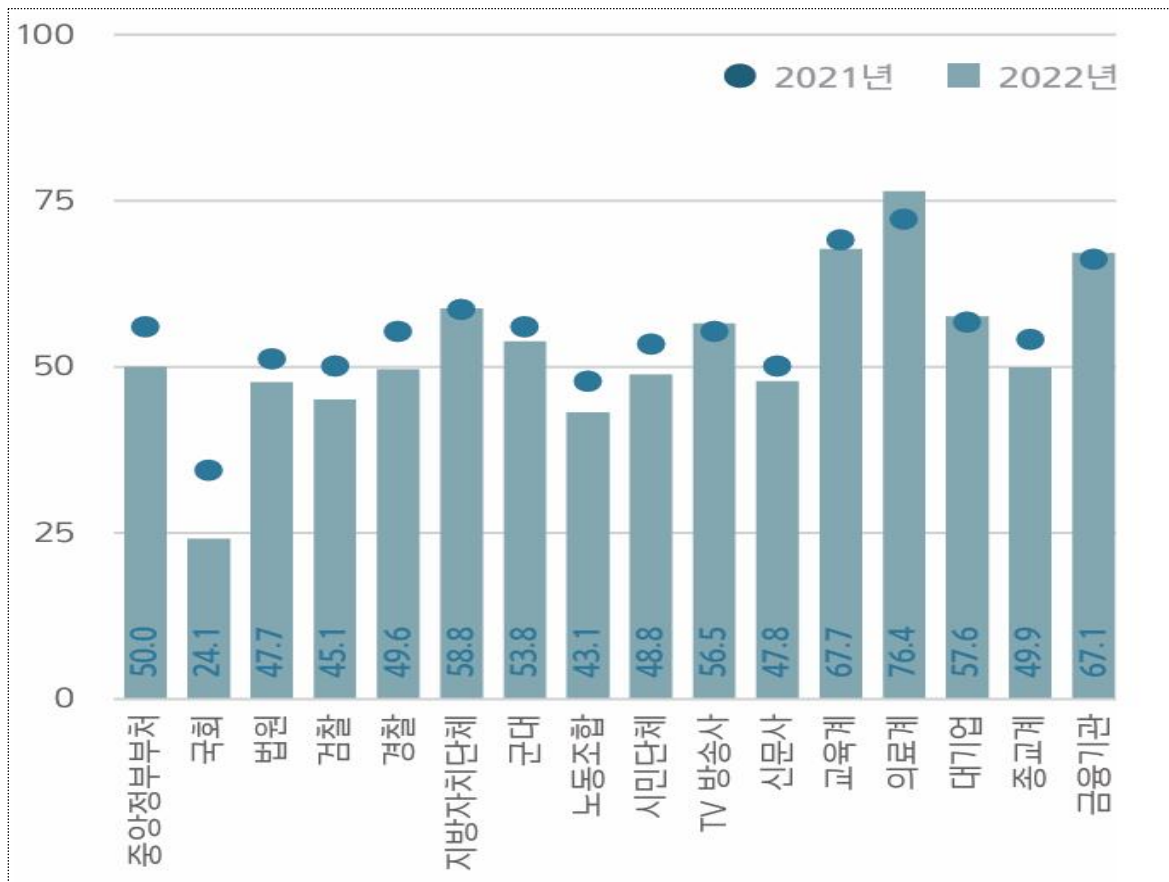
9) 문화일보(2024.1.29.),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 감축할 때”

더팩트(2023.6.21.), “무능, 부패해 36% 잘랐다...국회의원 정수 줄인 나라들”

전북일보(2023.6.15.), “국회의원 정수 100명 감축해야”

《 2021년, 2022년 기관별 신뢰도 》

(단위: %)



※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2024.2.22.), p.113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국회의 본질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각 지역 및 여러 사회적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인데, 의원정수를 줄이게 될 경우 국민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¹⁰⁾

특히, 600조를 넘어선 국가예산¹¹⁾에 대한 통제와 5천만 인구¹²⁾의 국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비대해진 집행권의 효과적 견제를 위해서는 현행 300명의 의원정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¹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인구 1억명 이하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

(2022년 인구수 기준)

국가명		총인구수	의원수			의원 1명당 인구수	
단 원 제	대한민국	5,133만명	300명			17만명	
	스웨덴	1,021만명	349명			3만명	
	그리스	1,031만명	300명			3만명	
	포르투갈	1,014만명	230명			4만명	
	헝가리	960만명	199명			5만명	
	이스라엘	892만명	120명			7만명	
	튀르키예	8,556만명	600명			14만명	
양 원 제	구 분		상원	하원	하원	총의원	
	체코	1,071만명	281명	81	200	5만명	4만명
	영국	6,849만명	1,450명	800	650	11만명	5만명
	폴란드	3,774만명	560명	100	460	11만명	7만명
	프랑스	6,558만명	925명	348	577	14만명	7만명
	스페인	4,671만명	615명	265	350	14만명	8만명
	캐나다	3,838만명	443명	105	338	26만명	9만명
	이탈리아	6,026만명	600명	200	400	15만명	10만명
	호주	2,606만명	227명	76	151	17만명	11만명
	독일	8,388만명	667명	69	598	14만명	13만명
	일본	1억 2,558만명	707명	248	465	27만명	18만명
	멕시코	1억 3,156만명	628명	128	500	26만명	21만명
	미국	3억 3,480만명	535명	100	435	77만명	63만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174

10) 시사오늘(2024.8.3.),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정치개혁이다”

11)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은 656.6조원임.

12) 2024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26만명임.

13) 김종철,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법과사회 64호(2020.6.) p.21.

결국, 개정안은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운영비용 감축 요구, 각 지역 및 사회적 계층의 대표성 확보 필요성,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2